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4 8 2
------	-------

제출년월일 : '98. 6. 13.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의 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취약지역 대비책
 - 통제구역 설정
 -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안 제3조)
 -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안 제4조)
 -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 처리를 위해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함.
- 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안 제6조)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함.
- 마.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7조)
 -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등 일반적인 대비책 규정
 -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사항 및 호수에 대한 대비책 규정

3. 관련법규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제정표준안(경남도)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고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고성군의회 의장
2. 고성경찰서장
3. 고성교육청 교육장
4.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
5. 육군제8358부대 117연대 기무반장
6.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7.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육군제8358부대 작전장교, 고성경찰서 경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58부대 동원장교
3. 총무담당간사 : 내무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고성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고성군청내에 둔다.

③ 법 제9조제2항5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16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⑦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관리)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 다.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